

정보공개 전담 직렬의 필요성과 업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ecessity of a Series of Charges in Information Disclosure for Work Improvement: Comparing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강 주 현 (Ju-Hyun Kang)**

이 영 학 (Young-Hak Lee)***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정보공개 업무 개선방안 |
| 2. 한국과 미국의 정보공개제도와 기록관리혁신 | 5. 맺음말 |
| 3. 정부3.0과 기록연구사의 업무 현황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관리분야에서 갈수록 복잡한 양상을 띠는 다양한 정보공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록관리법에 의해 기록연구사가 기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보공개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보공개 업무는 단순히 정보의 공개·비공개 결정을 떠나 기관의 업무 지식과 법률적 지식을 비롯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연구사는 정보공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 업무인 기록관리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본 연구는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공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정부정보전문가(Government Information Specialist)라는 정보공개 전담 직렬의 도입을 주장하는 바이며, 이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실무 기록연구사를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면담을 시도하였다.

주제어: 정보공개, 기록관리, 기록연구사, 오픈 거버먼트, 정부정보전문가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search for measures to properly respond to the greatly increasing demands of complex information disclosure. At present, South Korea makes the deployment of records managers at public institutions mandatory through the Records Act. Records disclosure goes beyond simply deciding on the revelation and private usage of records, and requires the professionalism of institutions such as task knowledge and law-related knowledge. However, most records managers lack professionalism in the task of records disclosure despite achieving such in their regular work of managing records. As a countermeasure for such issues, this research is proposing the introduction of a series of exclusive charges in records disclosure named the Government Information Specialist, which professionally manages the records disclosure of the US government. In addition, to understand the demand of such, surveys and interviews of records managers who undertake both records management and records disclosure tasks at a South Korean public institution was also conducted.

Keywords: information disclosure, records management, archivist, open government, government information specialist

* 이 논문은 강주현의 석사학위 논문 '정보공개 전담 직렬의 필요성과 업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의 내용 일부를 정리한 것임.

**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석사(rgiello@naver.com) (제1저자)

***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교수(youhlee@hanmail.net) (교신저자)

■ 접수일: 2017년 2월 15일 ■ 최초심사일: 2017년 4월 29일 ■ 게재확정일: 2017년 5월 19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2), 1-26, 2017. <<http://dx.doi.org/10.14404/JKSARM.2017.17.2.001>>

1. 머리말

현대 민주정부에서 공공기록에 대한 정보자유와 보장의 보장과 확대는 민주정부의 근본 토대이다. 정보에 대한 권리는 한 사회의 개방성, 투명성, 설명책임성을 증진시키는 근본적인 장치이며,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권리는 국민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국민의 정보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바로 정보공개제도이다. 현대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는 정치, 경제, 문화, 개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정보공개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장치 중 하나로 그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행정자치부, 2015b, pp. 3-4).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정보공개 확대에 대한 인식과 이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제도 혁신의 필요성이 미국 오바마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보공개 정책과 기록관리 혁신에 구체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행정자치부, 2015a, p.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래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는 전년도 대비 11.1% 증가한 612,856건이 접수되었고, 이는 정보공개법이 최초로 시행된 1998년의 26,338건 대비 약 22배 증가한 수치이다(행정자치부, 2015b, p. 17). 이는 온라인으로 쉽게 청구를 수발신할 수 있게 된 매체환경의 발달과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위한 사전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와 같은 여러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급격히 증가하는 정보공개의 청구에

반하여 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배치나 증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기록연구사 혹은 각 기관의 민원을 처리하는 일반 행정 공무원이 이를 겸직하고 있다(이보람, 이영학, 2013, p. 66). 특히 다수의 기록연구사가 소속기관에서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주요 업무인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대량의 정보공개 업무를 소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기록연구사들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및 이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과 갈수록 증가하는 이의신청 등의 정보공개 업무에 상당한 부담감과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기록연구사가 본 업무인 기록관리보다 정보공개청구 업무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기록관리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실정은 정부의 공공기록 관리 업무에 영향을 끼치며,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원활한 정보 이용을 저해한다. 미국은 오픈 거버먼트(Open Government) 발표 이후 2012년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정부정보전문가(Government Information Specialist) 직렬을 신설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여 더 정확하고 전문적인 정보공개를 가능토록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도 정부3.0 정책 하에서 갈수록 증가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더 나아가 이용자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전문성을 갖춘 정보공개 직렬을 마련하여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업무를 분리하고, 기록연구사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1.1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이상민(2013)은 미국 오바마 정부의 정보공개 확대와 정부기록관리 혁신 과정과 내용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제도와 기록관리혁신의 배경, 목적, 구체적 제도 내용, 제도를 실현하는 행정 구조와 정책 추진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그 민주적 역량에 대해 파악하였다. 특히 해당논문은 미국에서 2012년 3월 ‘정부정보전문가(Government Information Specialist)’라는 정보공개를 전담하는 전문가 직렬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분석하여, 본 논문에 있어 정보공개 전담 직렬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하였다. 정진임, 김유승(2014)은 정부3.0 추진으로 원활한 공공정보 활용을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살피고,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공개에의 이용 가능성을 이용자 중심의 시각에서 분석하였으며, 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인적,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서혜란, 옥원호(2008)는 기록연구사의 근무실태를 조사하여 기록관리 외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업무과중의 원인 중 하나로 기록관리와 성격이 상이한 정보공개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임진희, 이준기(2010)의 논문은 정보제공이 기관 업무 정보, 기록화, 관리 정도에 따라 해당 양상이 상이해짐을 밝히고 있다. 특히 비공개 결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관의 비공개 세부기준을 보완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일관성과 원칙을 고수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하영, 강순애(2013)는 서울자치구 기록연구사를 대상으로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해 기록연구사의 업무과부하 해결을 위한 인력충원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윤은하, 김수정(2015)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록연구사의 정보공개 담당자로서의 고충과 의견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기록연구사는 정보공개에 사회적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에도 정보공개 업무의 과도한 업무량과 악성민원, 부서 간 갈등, 행정소송의 심리적 부담감으로 정보공개 업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과도한 정보공개 업무량으로 인해 기록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게 됨으로써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기록관리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유현경, 김수정(2016)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직무만족도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는데, 기관 당 대부분 1인이 배치된 상황에서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기본적인 기록관리 업무 수행에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임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정보공개에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담당하는 기록연구사의 고충을 파악하여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록연구사는 온전히 기록관리를 담당하고 제 위치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반면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정보공개를 제공할 수 있는 개선된 환경을 마련하는 방안으로서 정보공개만을 전담하는 직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에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기록연구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현행 정보공개 제도의 문제점과 업무 고충, 정보공개 전담 직렬에 관한 의견 및 수요에 대한 파악을

시도하였다.

2. 한국과 미국의 정보공개제도와 기록관리혁신

2.1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2.1.1 알 권리와 정보공개

현대 민주사회는 여러 사상이나 의견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기초로 한다. 국가의 모든 정치적 의사결정은 주권자인 국민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형성에 있어 정보에의 접근과 그 수용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국정의 운영정보가 국민들에게 최대한 자유롭게 전달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알 권리는 198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까지는 주로 이념적 측면의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1989년 9월 4일 「대한민국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했다. 이 때 현재의 결정과 함께 국민의 정보주권을 보장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정보공개제도이다. 정보공개제도는 1996년 정보공개법 제정 이후로 알 권리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확대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윤철수, 김경호, 2010, p. 353). 정보공개제도는 정부와 국민 간에 자유로운 정보 공유를 보장한다는 원칙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

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가능케 한다(김승태, 2009, p. 122).

2.1.2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와의 관계

오랫동안 아키비스트의 본질적인 임무는 기록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으로만 인식되었다. Hilary Jenkinson은 아키비스트의 주된 책임은 기록이 가진 특성들을 완전하게 보전하고 지켜내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이 임무를 완수한 뒤, 이용자들의 기록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기록물의 활용은 이차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여 오랫동안 이용자의 정보 요구가 반영된 기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윤은하, 2012, pp. 165-167).

그러나 최근에 기록관리의 활용에 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현용 및 비현용 기록 또한 정보 및 증빙자료로서 제공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이해영, 2012, p. 178). 오늘날의 공공기록은 정부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 수단으로 민주주의의 핵심적 도구로서 공공기록의 체계적인 생산이 보장될 때, 공공정보의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정부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과 국민의 국정 참여와 감시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른 정보공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이는 각 국가의 정보공개 정책과 관련한 인프라의 구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필수적이다. 기본적으로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전제되어야 정보 제공이 가

능하다. 또한 기록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기록물과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 대상 정보가 대부분 일치하며 동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도 상당부분 중첩되어 양 법이 단편적으로 관련성을 가진 것을 뛰어 넘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박진우, 2009, p. 47).

2.2 한국의 정보공개제도와 기록관리혁신

2.2.1 한국의 정보공개법

1991년 청주시 정보공개조례를 계기로 하여 1992년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정문제가 대두되었다. 정부는 1994년 3월 2일 총리령 제288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을 공포하면서 행정정보의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와 감시·비판을 통하여 공개행정체제를 구축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임을 천명하고 정보공개제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하여 입법을 추진하였다.

1996년 12월 31일 공포된 정보공개법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와 기관, 정보공개 청구의 방법 및 절차, 정보공개에 관한 불복구제 절차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2.2.2 참여정부의 기록관리혁신

1999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한국 기록관리 제도를 체계화한 출발점으로서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모든 기록을 관리할 것을 명시하였으나, 2003년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의 기록물폐기실태 조사 결과 폐기오류, 폐기절차 위반 사례 등이 다수 발

견되었고 주요 회의의 속기록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음이 밝혀졌다. 심지어 기록물관리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조차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기록물을 기관자체에서 폐기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기록보존소의 지침을 어기고 기록물을 임의로 폐기하였다(참여연대, 2003).

이에 참여연대와 세계일보가 공동기획으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보도하였고, 이에 따른 대통령의 지시로 123개 공공기관의 현장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요기록물 유실 및 영구보존의 대책, 특수기록물의 보존 미흡 및 관리부실,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소홀 및 기록물의 범위 모호, 비밀기록물의 관리 소홀, 기록물관리 조직의 유명무실화 및 지방기록물 관리체계 미흡, 중요기록물의 보존 부실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감사원, 2005) 공공기록물 관리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부각되었다.

참여정부는 공공기록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혁신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공공기록관리의 혁신을 통해 행정부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였고(이영학, 2012, pp. 119-120), 이에 기록관리 전반의 혁신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및 관련법의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소속으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해당 위원회는 공공기록물관리의 개선을 위해 공공업무 수행의 철저한 기록화,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재정비, 정보공개 확대, 비밀관리의 체계화,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국가표준의 제정, 공공기록 편찬 및 서비스 확대, 법 제도의 정비, 전문인력 확보 및 능력개발, 거버넌스 조직의 실현 및 기록관리 인프라 구축과 같은 아젠다별 로드맵을 설정하였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p. 74).

2.3 미국의 정보자유제도와 기록관리혁신

2.3.1 미국의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은 1946년 제정된 행정절차법 제33조에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1966년 행정절차법의 개정이라는 형식으로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을 제정하여 누구에게나 연방행정기관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제정법상의 권리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정보자유법(FOIA)의 이용을 기피하고 공개 업무 처리 지연이 만연하는 등 시행이 매우 미비하였다가, 1974년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사건을 계기로 정부기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며 정보자유법은 정부기관에서 법제도로써 정당화되고 인정받기 시작했다. 1980년에는 연방행정기관에서 정보자유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하나의 전문가 집단으로 성장하여 '미국정보접근전문가협회(American Society of Access Professionals)'를 설립했다(이상민, 2013, pp. 13-14).

이후 각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던 미국의 정보공개는 2007년 정보자유법 개정안에 의해 혁신을 맞이하였다. 2007년 정보자유법(FOIA) 개정은 '열린정부'(OPEN Government Act of 2007)에 따른 것이었다. 개정 내용에는 정부기관의 정보자유법 시행을 감독하고, 정부기관의 비공개 결정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정보감독기구의 설립을 규정하고 독립적인 정보자유 옴부즈만 기구를 국가기록관리처(NARA)에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

함되었다. 또한 정보자유법 준수를 인사평가에 포함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과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근거가 되는 비공개규정을 해당 규정이 적용된 각 부분에 명시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정보공개와 관련한 재판 및 소송, 각 정부기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책임지는 정보자유책임관 지정, 비공개 예외조항 등에 관한 제도적 혁신을 가져왔다(이상민, 2013, pp. 16-17).

2.3.2 오바마 정부의 오픈 거버먼트와 기록관리혁신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은 투명성과 '오픈 거버먼트(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t)' 지시각서 발표를 통해 투명성·국민참여·협력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이러한 협동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활동에 관한 정부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것을 선언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해당 각서를 통해 공개지향적 원칙을 지켜 법이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과 투명성의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정보자유법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연방관보에 공표할 것을 지시하였다(이창주, 2013, pp. 150-151). 오픈 거버먼트의 주요 활동으로는 '오픈거버먼트 지침', 연방행정기관 '오픈 거버먼트계획', Data.Gov¹⁾와 정부지출·비밀기록에 관한 공개지향적 관리활동이 있다.

이러한 결과로 오바마 행정부 출범 1년 후 정보자유 요청 처리 지연 건수는 2008년 13만 건에서 2009년 7만5천 건으로 무려 42%나 감소하였고, 정보자유 업무처리 책무가 있는 97개의 연방행정기관에서도 매년 처리 지연분이 10% 이상 감소

1) 연방행정기관의 데이터셋트를 이용 가능한 포맷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웹 사이트.

했다(이상민, 2013, p. 20). foia.gov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총 정보공개 청구 접수는 788,769건이다. 이 중 정보부존재인 경우이거나 취하 혹은 다른 절차로 처리된 결과(175,783건)와, 보류 혹은 행정쟁송 중(115,080건)인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중 91%(전체공개 175,309건으로 35%, 부분공개 279,602건으로 56%)의 정보공개가 이루어졌다. 비공개는 42,995건으로 9%이다.

이어서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11월 '정부기록 관리에 관한 지시각서'를 공포했다. 정부기관의 활동과 결정을 기록화하는 기록관리 정책과 실무의 개혁이 핵심요지이다. 동 지시각서에 따라 2012년 8월 24일 예산관리처장과 국가기록관리처장이 공동으로 '기록관리 지침(Records Management Directive)'을 제정·공포하였다. 동 지침에서는 2019년까지 모든 영구전자기록을 전자포맷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시대와 전자업무환경에서 생산·관리되는 전자기록의 관리가 강조되었다. 또한 기록관리업무를 감독할 차관보급 고위직(SAO)의 지정 및 해당 임무와 기관 기록관리자의 국가기록관리처 연방기록관리 교육훈련의 이수를 보장하는 것 등이 명시되었다. 이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방정부기관의 현행기록관리 담당자(Records Manager)가 정규 직렬로 설치되는 등 기록관리의 역할, 책임, 전문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조치가 실시되었다(이상민, 2013, pp. 31-34).

3. 정부3.0과 기록연구사의 업무 현황

3.1 정부3.0의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취임 이후 국정운

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정부3.0 구상을 발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부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부처 간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여 최종적으로는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 구현으로 국민행복을 증대'하겠다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주요과제별로는 투명한 정부에 관한 추진사항으로 정보공개법을 개정(13.11 시행)하고 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하여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전면 개편하였다.

이는 정부의 투명성·접근성 및 시민참여확대 등 열린정부(오픈 거버먼트, Open Government) 구현이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증대되는 국민의 정부 참여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3.0을 통해 정보공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부산광역시교육청 자료실[「관계부처 합동」, 2014, pp. 4-13]). 이 중 정보공개 담당자와 직결된 정부3.0 주요과제는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민관협치 중 정보공개이다.

3.2 기록연구사의 정보공개 업무 현황

3.2.1 기록연구사의 배치 현황

최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기록연구사)의 배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을 보면 중앙부처와 광역 지자체 및 광역 교육청은 정원을 100% 충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앙부처와 광역 지자체의 경우 기관

〈표 1〉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기관유형별 배치 현황

구분	계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국공립 대학
		중앙부처	중앙소속	대통령 관련 기관	군 기관	시도	시군구	시도	지역	
대상기관 (정원)	795	48	130	3	126	17	228	17	176	50
배치기관	581	48	109	3	27	17	215	17	103	42
배치인원	624	55	110	3	40	34	219	18	103	42
배치비율 (정원대비)	73.1%	100%	83.9%	100%	21.4%	100%	94.3%	100%	58.5%	84%

출처: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현황 전수조사 결과 보고』, 2016. 12. 31.

규모에 따라 2인 이상의 인원이 배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의 중앙소속기관, 지자체 시군구, 지역 교육청 및 국공립 대학의 배치는 비교적 부진하며, 특히 군 기관과 지역 교육청의 경우 배치되지 않은 기관이 많다. 해당 기관들은 기록연구사를 추가 배치하여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표 2〉의 연도별 배치 현황을 보면 해마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기관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증가 추세가 정체되어 있다. 이는 기존에 배치되지 않은 기관에 새로운 기록연구사가 배치되고 있는 것이지, 기존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된 기관의 업무를 위한 추가 인력 보충이 아니므로 기록연구사 1인이 기록관리, 정보공개 두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에는 크게 변함이 없다.

〈표 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기관 연도별 누적 현황

기관 \ 연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총계(795개)	142	277	331	376	432	425	524	539	581
중앙부처(48개)	43	43	45	45	47	47	44	48	48
중앙소속(130개)	0	0	0	0	30	30	65	88	109
대통령관련(3개)	4	4	4	4	4	3	3	3	3
군기관(126개)	0	5	6	6	18	19	27	25	27
시·도(17개)	16	16	16	17	17	17	17	17	17
시·군·구(228개)	67	186	210	224	225	208	203	213	215
시·도교육청(17개)	10	13	14	15	17	17	17	17	17
지역교육청(176개)	2	10	29	57	56	66	71	86	103
국공립대학(50개)	0	0	7	8	18	18	30	42	42

출처: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현황』, 2016. 12. 31.

3.2.2 기록연구사의 담당 업무

국가기록원의 기록관 운영지침과 현행 기록관리법에 따르면 기록연구사의 업무는 기관별로 분담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같으며, 그 중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은 <표 3>과 같다.

효율적인 정보공개는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표 3>과 같이 기록관 설치 운영 지침에 유사업무 통합 및 직제 반영으로서 문서계, 행정자료실, 정보

공개접수청구 업무 등이 기록관리 업무와 함께 통합되어 있다. 즉, 정보공개 업무는 기록관리의 최종 목적인 활용의 한 방안으로서 그 유사성에 따라 법²⁾과 기록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기록관리 분야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정보공개 담당자의 역할은 <표 4>와 같이 5가지로 세분화된다. 일반적으로 기록연구사나 일반 행정공무원이 이를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다양한 직렬이 정보공개를 담당하고 있으나 기록연구사 직렬이 가장 많이 담당하고

<표 3> 기록관 인력배치-업무분장

구분	업무분장	비고
행정자료실 및 정보공개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행물 및 행정자료실(행정자료열람실) 관리 ◦ 정보공개접수 및 민원인 열람담당 ◦ 기록물 기관열람 및 대출관리 	

출처: 국가기록원 『각급기관 기록관 설치·운영 지침』, 2007.

<표 4> 정보공개 담당자별 세부역할

담당자	역할	주요 업무
정보공개 접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창구에서 청구인이 정보공개 - 청구 및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청구 등록/관리 - 이의신청 등록/관리 - 청구인 요청에 따른 처리현황 조회 정보
정보공개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정보공개 업무 총괄담당자 - 기관별 정보공개 업무 처리현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기관 이송, 이송불가처리, 처리부서지정, 민원이첩처리업무 - 정보공개/이의신청대장, 사용자관리정보
정보공개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별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로 부서의 정보공개 업무 처리현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서의 정보공개처리자 지정 - 부서의 정보공개 업무 및 이의신청 현황관리
정보공개 처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에 대한 처리 담당자 - 정보공개 심사, 결정, 통지 업무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결정, 결정내용결재, 결정통지 - 이의신청결정, 결정내용결재, 결정통지
시스템 운영자/시스템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정보공개 서비스 전체업무 관리자 - 정보공개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정보공개 담당자 등록 - 접수처 관리 업무 - 전 기관의 정보공개 업무 처리현황 관리

출처: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열람서비스 실무매뉴얼』, 2011.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기록관) 제2항 제5조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있고, 대다수가 기록관리 업무와 정보공개 업무를 겸하고 있다(전슬비, 강순애, 2016, pp. 73-74). 서울시 자치구청의 경우 대부분의 기록연구사 1인이 기록관리 업무 및 정보공개업무를 병행하고 있다(정하영, 강순애, 2013, p. 63). 기록연구사는 기관에서 기록관리에 관한 교육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3 기록연구사의 정보공개 업무 조사 범위

해당 조사는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를 겸직하는 실무자의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기록연구사이며, 조사 방법으로 심층면담을 주로 2016년 5월 한 달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에 응답한 실무자 목록은 다음과 같이 총 7명이다(〈표 5〉 참조).

응답자 대부분이 기록관리에 비해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할 경력은 짧은 편이었으나 정보공개 경력 자체는 업무에 특화되었거나 숙련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파악하였다.

질문지 문항은 아래와 같은 범주로 구성하였다. 심층면담의 경우 평균 9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 ① 응답자의 연령 · 직렬, 기록관리 · 정보공개 근무경력
- ② 기록관리 · 정보공개 업무량에 관한 의견
- ③ 정보공개 업무량의 비중에 관한 의견
- ④ 기록관리 · 정보공개 업무 외의 업무 담당 여부
- ⑤ 정보공개 업무를 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 ⑥ 약성민원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경험 여부
- ⑦ 기관 배치 전 정보공개 관련 지식 습득 여부와 필요성에 관한 의견
- ⑧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가 갖춰야 할 전문성의 범위
- ⑨ 기록관리 · 정보공개 업무 겸직에 관한 의견
- ⑩ 정보공개 업무 분담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중 1명은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업무량이 적당하다고 밝혔으나 나머지는 모두 업무 중 정보공개 업무량의 비중이 높고 기록관리 업무와 합친 업무량이 많아 부

〈표 5〉 심층면담 및 질문 응답자 목록

구분	연령	근무처	기록관리 경력	정보공개 경력
A	50대	중앙부처	10년 이상	5년 이상
B	30대	중앙부처	5년 이상	5년 이상
C	30대	중앙부처	5년 이상	3년 이상
D	30대	중앙부처	10년 이상	5년 이상
E	30대	중앙부처	5년 이상	5년 이상
F	40대	중앙부처	10년 이상	5년 이상
G	30대	중앙부처	3년 이상	3년 이상

담으로 느꼈다.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업무 외에 기타 잡일과 같은 서무 업무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직원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문의로 시간 소모가 많고, 행정심판이 걸리거나 업무가 한꺼번에 몰릴 때 정보공개 업무로 인한 기록관리 업무 시간이 부족하여 정보공개 업무가 기록관리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 대상 모두 악성민원 및 불복구제 절차로 인한 이의신청의 경험이 있었다. 정보공개 업무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5명이 악성민원을 들었으며 조사 당시에도 악성 민원의 정보공개가 밀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음으로는 비공개 사유 결정, 기관 내부 업무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업무평가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기관 배치 전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 경험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정보공개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 조사 대상 모두 동의하였고 이는 개인정보 및 비공개 설정 부분에 해당하였다.

“(직원들이)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비공개 사유를 적어 결정통지를 작성하는 것이다. 판례와 비공개 조항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비공개 사유 적용을 힘들어 한다. 절차는 워낙 매뉴얼이 많으니까 금방 습득하는데 부분 공개, 비공개 감을 못 잡는다.”³⁾

조사 대상 중 4명이 정보공개 업무가 기록연구사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정보공개는 모든 공무원이 숙지해야 할 사안이나 기록

관리법 제8조 기록관 운영 부분에서 정보공개는 빠져야 될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 명을 제외하고 정보공개 업무와 기록관리 업무가 분담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업무는 기관의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공가능한 정보가 무엇인지 발굴하고 기관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기록관리 업무 또한 기관의 기록관리 저변 확대 및 인프라 확충 등 추진해야 할 각종 업무가 많다보니 단순한 업무과중의 문제뿐만 아니라, 두 업무 모두 전문성을 적절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⁴⁾

조사는 현행 정보공개제도에 요구하는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심층면담을 바탕으로 파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4 정보공개 업무의 고충 및 문제점

3.4.1 악성민원

합리적 목적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뚜렷한 목적이 결여되어 있거나 보복성 성격을 가진 청구형태를 일명 악성민원이라 하는데, 이는 대량의 정보를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청구하여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청구 형태이다. 조사 대상 기록연구사 중 전원(100%)이 악성민원이라 여겨지는 청구를 경험했거나 조사 당시에도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대상자 모두 악성민원을 정보공개 업무 중 가장 대응하

3) 중앙부처 F 기록연구사와의 면담내용 중 발췌.

4) 중앙부처 C 기록연구사와의 면담내용 중 발췌.

기 어려운 업무라고 밝혔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를 알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를 가지고 대량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행태이다. 필요에 의한 청구는 수량과 관계없이 정보공개에 취지뿐 아니라 개인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도 제지해서는 안 되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어떤 사안에 대한 수년치 정보를 청구한 후, 공개 결정통지를 받고 나면 청구자가 정보를 찾아가지 않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동일 사안에 대한 정보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보가 정말 순수하게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을 괴롭힐 목적으로(한다). 이유는 모르지만, 괜히 이것저것 청구해 놓고 수수료를 지불 안 하고 행정력만 낭비시키고 자기는 나 몰라라 (한다). 그런 걸 1년에 2천여 건 하는 사람들이 상당 수 있다. 무한봉사 식으로 전부 민원인에 맞춰서 하다 보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0년 치 목록을 적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전부 확인하는 수밖에 없고 수수료를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장수를 일일이 다 세는데 고통이다. 찾아가지도 않는다.”⁵⁾

법원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 “공공기관을 괴롭히기 위한 권리 남용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악성민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정보공개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생계·안전·사업 등 국민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대 국민 서비스로 제공하며, 정부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스스로 행정 감시의 역할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정부를 비롯한 관련 사회단체는 무릇 이러한 인식과 함께 앞으로 정보공개 제도를 현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적용·발전시키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기관이 시의성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여도 이용자의 수요가 없으면 이는 무의미한 것으로 무엇보다 이용자의 역할이 필수적이지만, 정보공개에 본래 취지에 반하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청구는 정보공개 제도의 전면에서 서 있는 기록연구사를 비롯한 정보공개 담당자를 시달리게 할 뿐이다.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진 청구는 정작 공개 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해야 하는 청구들에 투자할 시간을 소비하게 하여 행정력 낭비를 만연하게 한다. 이는 기록관리와 함께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기록연구사가 기록관리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결국 소수의 악용 청구는 수많은 이용자의 불만족을 야기하고 정보공개 담당자들의 능동적인 정보공개 마인드를 저하시키는 행태일 뿐이다. 이는 알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나, 모든 자유에는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처럼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대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효율적이고 발전된 정보공개 제도의 운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악성민원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중앙부처 A 기록연구사와의 면담내용 중 발췌.

3.4.2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소송

정보공개에 관한 불복구제 절차로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다. 행정자치부 『2014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2014년 2,939건으로 2013년(3,320건) 대비 11% 감소하였고,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822건으로 2013년(657건) 대비 34.2% 증가하였으며, 행정소송 제기는 130건으로 2013년(171건) 대비 24% 감소하였다.

2014년 전체 정보공개 청구건수 증가율(11.1%, 총 381,496건)에 비하면 행정소송 제기는 많이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행정부 내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여 자체적 해결을 요하는 행정심판은 증가하였다(행정자치부, 2015b, p. 30). 이는 청구인들이 알 권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에 비례하여 불복구제 절차가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인 기록연구사에게 업무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연장할 수 있으나, 기록연구사의 심층면담에 따르면,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제도상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7일이라는 시간이 심의회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정보공개를 청구 받고 일반적으로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

내에 통지하여야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2014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청구의 99.7%가 법령상의 처리기한인 20일 이내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통지에 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하는 이의신청의 처리 기간은 7일이다.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기에 7일이라는 기간은 턱없이 모자라며 이는 기록연구사가 기록관리 업무에 몰두할 수 없는 요인이기도 하므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의신청으로 정보공개심의회가 개최되면 합리적으로 정확한 통지를 위해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담당자는 해당 정보와 관련된 법과 최신 경향이 반영된 판례를 파악하여 심의회 의원들과 공유를 해야만 합당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 담당자는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최신판례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판례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동안 (우리 기관이) 비공개 해오던 것이 행정심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올해는 변경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이것을 몰라서 또 비공개를 하면 이의가 들어온다. 그래서 결정통지할 때 대법원 판례, 법원 판례에 관한 최신 판례를 보면서 처리를 해야 한다.”⁶⁾

3.4.3 비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

행정자치부 『2014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6) 중앙부처 F 기록연구사 면담내용 중 발췌.

에 따르면 2014년 정보공개 청구건수 중 비공개 결정은 전체의 4%에 해당하는 16,835건이다. 비공개 결정의 주된 사유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및 우려가 있는 정보(31%, 5,183건), 법령상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27%, 4,600건)인 경우가 많았다.

실제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6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5호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을 비공개 사유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원자료를 가공해야 할 정도가 심한 정보는 기관에서 이를 가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정보부존재로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 내부에서 해당 정보를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을 때, 민감한 내용의 경우 전화해서 취하유도를 하기도 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를 하는 등 일선에서 마음만 먹으면 공개 거부가 가능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 사항이 너무 포괄적인 문제도 있거니와 처리자의 정보 공개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보공개법 제9조는 정보공개에 대한 면책 사항이 아닌 정보 보호 사항이다. 제9조에는 공개될 경우 기관이나 개인 또는 단체에 심각한 위해가 예상될 때 비공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예상되는 위협의 범위가 모호하여 비공개 사항에 적용하기에 용이한 경향이 없지 않다.

비공개 문제는 정보공개청구 이전에 기록생산 단계에서 처리과의 업무담당자가 정보공개 여부를 지정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기록물을 생산할 때 보존기간 등 공개여부를 지정하

는데 현행 기록관리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소관 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때 공개 여부를 재분류해서 이관하고 기록관에 이관된 후 5년마다 비공개 기록물을 공개재분류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개재분류 대상 기록물의 양을 기록연구사 1,2인이 감당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업무와 기록물의 맥락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외부 인력인 용역 업체가 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기준은 이를 더 세부적으로 제시하면 오히려 비공개를 우선으로 하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할 때 해당 정보 기록물 전체에 대한 처리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이 요구되며, 투명한 행정을 위해 비공개 사유를 명시할 때 처리자가 성실히 임하여 청구자가 충분히 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분공개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 공개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2014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총 38,575건이며 전체 10%에 해당하므로 이는 적지 않은 처리결과인데, 부분공개는 특히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다. 공인이 아닌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 사생활과 이에 대한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판단하여 부분공개 처리를 해야 한다. 이외에 전화번호 뒷자리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어 부분공개 범위에 포함하기도 한다. 또

한 재판 기록물의 경우 제3자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가리키는 기록물에 대한 총체적인 맥락 판단이 필요하므로 이 역시 기관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3.4.4 순환보직 체제

일반적으로 기록연구사 1인에게는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업무가 주어진다. 이를 분담하는 기관도 상당하나 정보공개 전담과를 개설하고 체계적으로 분담·담당하는 경우는 매우 극소수의 경우로서 사실상 대부분의 기록연구사가 이를 겸직하고 있다.

기관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접수는 일반 행정직이 담당하기도 하는데 행정직은 일반적으로 2년마다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기 힘든 환경이다. 이러한 체제 하에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재로 정확한 정보공

개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구된 정보의 주관부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청구 정보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한 채 공개 여부를 통지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한 민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및 소송은 스트레스를 동반한 업무 부담감을 가져오며, 기존 업무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업무 담당자는 정보공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인사이동을 요청하는 일이 빈번하다. 최근 공무원 순환보직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공무원들의 경우 전문직위로 3~5년의 복무를 의무화하는 등 전문직위제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정보공개 업무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록연구사의 경우, <표 6>에 의하면 중앙부처·소속기관·대통령관련기관은 거의 연구직으로 배치되었다.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 임기제

<표 6>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채용 형태 및 현황

기관	총 배치 인원	기록연구직	행정/사서	임기제		기타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총계(795개)	624	438(70.2%)	16(2.5%)	112(18.0%)	17(2.7%)	40(7.1%)
중앙부처(47)	55	55(100%)				
중앙소속(129)	110	110(100%)				
대통령관련기관(3)	3	3(100%)				
군기관(124)	40					40(100%)
시·도(17)	34	27(79.4%)	2(5.8%)	5(14.8%)		
시·군·구(228)	219	106(48.4%)	3(1.4%)	93(42.5%)	17(7.7%)	
시·도교육청(17)	18	14(77.8%)	2(11.1%)	2(11.1%)		
지역교육청(176)	103	85(82.5%)	8(7.8%)	10(9.7%)		
국공립대학(51)	42	38(90.4%)	1(2.4%)	2(4.8%)		

출처: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현황』, 2016. 12. 31.

가 전체 절반에 이르고 있다. 임기제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무가 종결되므로 한 자리에서 오래 근무하며 기록관리나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체득하고 발휘할 수 없는 고용형태이다.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하는 것은 개인의 안위뿐 아니라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기관의 체계적인 기록관리와 질적으로 향상된 정보공개를 가능하게 하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관에서는 정보공개 업무를 아무나 맡아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기 때문에 기록연구사나 일반 행정직이 정보공개 업무를 기존의 업무와 병행하며 과부하를 겪고 있다. 정보공개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연속된 업무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해당 업무의 담당자는 전문과정을 훈련받은 자를 채용하여 업무 분담의 기능뿐만 아니라 능률적인 정보공개를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정보공개 업무 개선방안

4.1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인식 개선

체계적인 기록관리는 효율적인 정보공개의 전제가 되므로 기록연구사는 기록의 생산부터 이관·보존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기관에서의 기록관리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다. 이는 대부분의 기록연구사가 기록전담과가 아닌 총무과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전문직은 그 직종이 가진 기술이 어려워져 타자가 운용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다. 기록관리는 짧은 기간에 팔

목할 만한 실적을 드러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 확대가 지지부진한 점은 감안하여야 한다. 이는 모든 기관에 기록연구사가 배치되지 않은 요인 중 하나일 것이며, 이로 인해 1인의 기록연구사가 모든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함께 정보공개나 기타 사무 업무마저 도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기록연구사는 기관의 기록관리 지면 확대와 인프라 확충을 위해 힘써야 하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기록관리의 중요성 및 인식 확대를 위한 노력이 축적되면 기관의 인식 또한 변화할 것이다. 기록관리의 최종 목적은 활용이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정보공개의 중요성에 따라 계속해서 기록관리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는 현 정부의 정부 3.0 정책으로 대두되어 각 기관에서 정보공개를 확대함으로써 기록물 활용이 활성화 되는 시기를 맞았다. 정보공개 청구는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청구 양상도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업무 과부하를 낮추고 이용자 입장에서 더 편하게 원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기록물을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공개의 발전에는 공개지향적인 기관의 정책 및 의지 또한 중요하다.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로는 서울시를 들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정보공개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정보공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현재는 서울시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결재문서, 정책연구보고서 등 약 500만 건의 주요 행정정보 리스트를 국내 공공기관 중

최초로 ‘깃허브(GitHub)⁷⁾에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김소영, 2016).

기관과 더불어 청구자인 국민의 의식 전환도 필수적이다. 청구자는 민원과 정보공개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정보공개를 위해서는 질의나 정보공개 대상이 아닌 단순 민원을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청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공개 대상이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여 마구잡이 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 악성민원의 경우 지나친 청구로 인해 많은 기관들이 행정심판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정보공개가 기피업무로 인식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현행정보공개제도상 법의 판결이 유일하다. 2014년 12월 24일 대법원은 한 재소자의 반복적이며 대량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권리남용을 이유로 비공개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2015, p. 23).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 및 심층면담과 더불어 각종 권리남용적 정보공개청구의 사례를 보았을 때 악성민원인에 의한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를 제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없었던 것은 오히려 기관에서 이를 권리남용의 근거로 정보공개에 부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나 동기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오

히려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성민원의 청구는 반드시 자제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성격을 가진 청구를 자제하도록 하는 장치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4.2 정보공개 통합 관리

현재 정보공개법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해야 할 주체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가 들어왔을 때 기록관이 심의대상 비공개기록의 비공개 사유가 유효한지 혹은 공개대상인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에게 의견조회서를 발송하여 처리과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세스는 일관성 없는 정보공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처리과 부서와 담당자에 따라 동일·유사한 건에 대해 상이한 정보공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행정자치부에서 정보공개 매뉴얼을 배포하고, 대부분의 기관이 개별적으로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처리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교육을 실시하지만 처리과 업무담당자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기록연구사에게 문의하여 처리하는 실정에는 변함이 없다. 행정직 공무원은 정보공개를 단순하고 부수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전부터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7)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프로그램 소스 및 데이터를 쉽게 공유·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허브로서 현재 전 세계 1,200만 명이 넘는 개발자가 이용 중이며 지난해 2월 미국 백악관이 ‘2016년 예산안’을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하는 주체가 현재 기록연구사와 처리과 업무담당자가 혼재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여 모든 일련의 과정을 기록관에서 담당하면 정보공개에 관한 일관성을 획득하여 정보공개 기준에 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록관에서 정보공개 모든 과정을 담당하면 정보공개 결정마다 처리과에서 기록관에 문의하는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많은 기관에서 기록연구사는 공개대상 정보의 소관부서와 담당자를 설정하여 정보공개를 권장하며 씨름을 벌이고 있으나, 기록연구사 한 명이 모든 과정을 담당하면 정보공개에 관한 일관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연구사는 소속 기관의 기록관리라는 본연의 임무가 있으며 1인 담당 체제로는 정신적·육체적 여유가 부족하다. 기록연구사는 이와 함께 정보공개를 판단하기 위한 전문성을 심화시켜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통합 업무는 현재의 1인 담당 체제가 감당하기에는 업무가 과중하며 인력이 부족하므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록관 소속이지만 기록연구사와는 구분된 정보공개 전담 직렬이 필요하다.

4.3 정보공개 전담 직렬

4.3.1 전담 직렬의 필요성

공개·비공개 여부 결정은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공개심의회가 비공개 대상인 정보에 대한 청구가 들어왔을 때 공개 여부를 심도 있게 파악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의 식별 능력이 관건이다. 정보의 공개 여부에 있어 심의회 위원들의 전문적

인 판단과 함께 내부 직원인 정보공개 담당자의 해당 문건이 가진 정보 내용 및 영향력에 대한 판단이 합쳐졌을 때 가장 정확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업무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기관에서 정보공개에 대하여 단순히 공개 혹은 비공개하면 될 사안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공개대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 자체는 크게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비공개 정보의 경우 또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점을 적용하여 통지하면 된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비공개를 적용해야 하는 내용의 전체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비공개 설정 기준의 5호(의사결정과정), 6호(개인정보)가 이에 해당된다. 이 조항들은 현재 시점에 정책적으로 공개되어도 되는 정보인지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한 비공개 설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공개 설정을 제대로 하여 공개와 비공개 정보를 명확히 구별하면 그만큼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대상도 뚜렷해지기 때문에 이는 결과적으로 원만한 공개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는 민감한 개인정보, 비공개를 해야만 하는 정보 보호에도 기여한다. 특히 개인정보는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아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는 인식이 있으나 관련 지식이 없으면 노출되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인지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다.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의문을 제기한다. 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적용하기만 하면 되지 않나. 그러나 비공개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5호, 6호, 7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장 부각이 되는 부분이다. 생각지 못한 개인정보가 무수히 많다. 현재 시점에 공개되는 것이 시기적절한 지에 대한 판단도 기관의 재량에 달려있는 부분이다. 어느 수준까지, 언제 공개해야 하는지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인드가 요구된다. 문서를 생산해서 평가 보존하는 것까지는 기록연구사가 담당하는 게 맞지만 후차적으로 문서의 공개여부를 정확히 평가해서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부분이다.”⁸⁾

복잡한 업무 사안에 관한 기록물의 공개에 있어서 그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성은 꼭 필요하다.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공개 내용의 수준과 그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담당자는 여러 법률에 관한 최신 판례 또한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기관의 정보공개 평가 또한 비공개 설정을 척도로 시행하고 있다. 기관의 정보공개 평가는 해당 기관의 행정관리역량 평가지표에 포함하여 평가되고 있는데, 측정방법 및 기준을 보면 정보공개 처리의 적절성으로 비공개 결정과 정보부존재 결정의 사유를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수많은 기록물 속에서 비공개 요소를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는 한 기관의 한 부서에서 여러 해에 걸쳐 업무 경험을 쌓고 관련 지식을 습득하

기 위해 업무 외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연방정부에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정부정보전문가(Government Information Specialist)’와 같은 직렬의 도입을 주장하고자 한다.

4.3.2 미국의 정부정보전문가(Government Information Specialist)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진행 중인 오픈 거버먼트 추진과 Sunshine Week⁹⁾ 지원의 일환으로 미국 연방인사관리처(U.S. Office Personnel Management: OPM)는 2012년 정보자유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정부정보시리즈(Government Information Series)라는 이름의 새로운 직렬을 발표하였다. 이 직렬의 임무는 미국 시민이 정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책임 의무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 직렬은 미국의 아키비스트이자 미의회 상원인 David Ferriero와 연방정부 기록심의회, 그리고 NARA의 협력에 의해 수립되었으며, 백악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투명하고 열린 정부에 대한 비전을 실현할 책임이 있는 연방정부에서 이들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의 중요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2012).

이렇게 생성된 미국의 정보공개 전담 직렬은 『Position Classification Flysheet for Government Information Series, 0306』에 정부정보전문가(Government Information Specialist)로서 법적 근거와 담당 업무가 명시되어있으며,

8) 중앙부처 A 기록연구사 면담내용 중 발췌.

9) 매년 3월 16일을 포함한 주에, 미국의 모든 매체에서 오픈 거버먼트에 관해 공공 토론하는 국가적 사업.

『Position Classification Flysheet for Government Information Series, 0306』은 미국법전(United States Code, U.S. Code, U.S.C.) 중 정부조직법(Title 5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에 근거한다.

『Position Classification Flysheet for Government Information Series, 0306』은 이 직책의 임무에 대해 정부 정보를 생성·보급·관리하는 것을 수반한 업무 수행을 관리·분석·감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부정보전문가는 정책·고문기관 경영을 수립하고 정보 공개를 관리하는 연방법을 준수하여 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연방정부기록으로의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법·규정·정책을 해석·적용하여 인식 가능한 정보를 선택하고 국민에 서비스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지원한다. 즉, FOIA(정보자유법)에 의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정부정보업무(Government Information Work)

는 정보자유법(FOIA)과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의 적절한 조합으로 업무를 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표 7>을 보면 정부정보전문가는 정보공개의 청구, 이의신청, 통지를 포함한 모든 과정을 담당하며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 비중이 큰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정부정보전문가(Government Information Specialist) 직렬에 대한 자격 요구사항으로는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자동화, 컴퓨터, 정보 기술뿐만 아니라 정부정보 관리 업무를 위한 시스템을 넓게 이용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경력자로 설정하고 있다. 최소 1년 이상의 연방정부에서의 경험은 기관의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정보공개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 직렬은 대부분 정규직(Full Time, Permanent)으로 채용¹⁰⁾하고 있다. 이는 한 기관에서 오래 근무하도록 하여 업무 전문성을 축적하게 하기 위함이다.

<표 7> 정부정보전문가(Government Information Specialist) 업무분장

정보자유법(FOIA)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정보 공개 데이터 조사·분석·평가	정보 보호 정책과 절차 수행
청구된 공개에 대한 일괄적 검토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요청 처리
정보자유 체계와 법적문제 해결	연방정부 데이터 보호 정책과 처리에 관한 안내 제공
공개/비공개 결정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부적절한 침해로 여겨질 수 있는 요소 평가
접근 거부로부터의 항소 일체 검토분석	기관의 활동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향 평가
청구인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락 담당	내부 정보기술보안부서와 협력
정보공개 관리에 관한 기관의 정책 및 절차 개선	개인정보 관련 요청 업무 대표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에 관한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교육
	개인정보 프로그램 검토 및 평가

출처: U.S. Office Personnel Management, 『Position Classification Flysheet for Government Information Series, 0306』, 2012. 3.

10) 미국 구직 사이트 American Jobs에서 정부정보전문가(Government Information Specialist) 채용 공고 탐색.

정보공개 전담 직렬은 기관의 특수 업무나 법률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출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록관리에 관한 지식을 갖춘 인력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록물의 현용·준현용과 같은 생애주기, 보존기간을 비롯한 기록관리의 전체적인 시스템 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때 정보공개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정보공개 전담 직렬과 유사·관련한 직렬로 『Archivist Series, 1420』을 나열하고 있다. 이 Series는 연방정부의 공공 기록물과 역사적 기록물의 평가·정리·기술·보존·참고 업무 서비스 제공 및 발행과 같은 일반적인 기록관리 업무 수행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연방정부의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업무가 구별되어 있는 동시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록관리 업무 경험자 혹은 현 기록연구사와 같은 지식이나 조건을 갖춘 자가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관련 전문 자격(증)을 개설하거나 정보공개, 개인정보와 관련한 새로운 제도가 개편될 때마다 그에 관한 교육 이수를 필수로 하여 관련 지식에 기반을 둔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3.3 제도적 기틀 마련

기록연구사의 배치는 현행 기록관리법 제41조에 근거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해 기록연구사는 <표 8>과 같이 학예직군에 기록연구 직렬로 배정되어 있다.

정보공개 전담 직렬의 생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정보공개법에도 전문 담당자의 자격 및 배치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현재 정보공개법에는 정보공개 담당 주체에 관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기록관리법에서 정보공개를 기록관에서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부분을 근거로 하여 기록연구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정보공개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연방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직렬을 생성하였지만, 한국과 미국의 기록관리나 정보공개 환경은 다르고 법적 체계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정보공개 제도의 운용에는 전담 직렬이 필수이므로 직렬 도입의 필요성을 논하기 위해 법, 제도, 교육 등 다양한 방면으로부터의 접근이 요구된다.

5. 맺음말

현재 정보공개는 중요성은 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조명 받고 있다. 정보공개는 효율적인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록관리 정책과

<표 8>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학예군 직급표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	
			연구관	연구사
1. 학예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연구관	기록연구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급표』.

함께 관련 인프라의 구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은 공개든 비공개든 어떤 방향으로라도 그에 따른 영향력을 제고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무조건적인 공개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여 해당 사안을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역할이 요구되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담당하는 기록연구사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업무의 과중함을 파악하고 정보공개를 전담하는 직렬의 필요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의 근무 기관이 모두 중앙부처에 한정되어 있어 일반화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러한 경향성이 있음을 참고하고자 하였다. 기록연구사의 업무 분담과 함께 능률적인 정보공개의 운용을 위해서는 미국의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정부정보전문가를 예시로 들어 정보공개를 전담하는 직렬을 도입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정보전문가의 정확한 배치 현황

이나 연방정부 외 타 기관에 대한 배치 여부, 그리고 기록관과의 연계 프로세스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관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직렬 마련을 위한 법, 제도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지 못한 점 역시 한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서 오픈 거버먼트 정책과 기록관리혁신을 잇달아 시행하면서 정보공개 직렬을 생성하여 정보공개를 전담하도록 한 것은 미국의 아키비스트들이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두 가지 업무가 모두 전문성에 기반하여 상호 밀접한 관계 속에서 분담되어야 함을 인식하여 정부에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은 기록연구사가 기록관리 업무에 보다 집중하도록 함으로서 기록관리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고 정보공개법에 관하여도 기관 내에서 부수적 업무라는 인식이 만연한 상황이지만 한국보다 앞선 미국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정책에 관한 심층적 고찰을 통해 기존의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감사원 (2005). 공공기록물 보존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서울: 감사원.
 국가기록원 (2007). 각급기관 기록관 설치·운영 지침. 대전: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2011). 국가기록원 열람서비스 실무매뉴얼. 대전: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2016).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현황. 대전: 국가기록원.
 김승태 (2009). 정보공개제도의 성과와 한계. 한국공공관리학보, 23(4), 119-147.
 박진우 (2009). 정보공개법상 법령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관한 고찰. 동아법학, 43, 29-56.
 서혜란, 옥원호 (2008). 기록연구사의 근무실태 및 제도운영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1), 235-255.

- 유현경, 김수정 (2016).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47, 95-130.
- 윤은하 (2012). 기록정보 서비스와 정보공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163-179.
- 윤철수, 김경호 (2010). 헌법재판소의 알 권리 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언론과 법, 9(2), 349-386.
- 이보람, 이영학 (2013). 정보공개제도에서 공개 기록정보의 제도적 신뢰성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5, 41-91.
- 이상민 (2013). 미국 정보자유제도와 정부기록관리 혁신: 오바마 행정부의 정부개방정책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35, 3-40.
- 이영학 (2012). 참여정부 기록관리정책의 특징. 기록학연구, 33, 113-153.
- 이창주 (2013). 미국에서의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공개제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이해영 (2012). 기록관의 정보서비스 현황 조사 및 서비스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177-201.
- 임진희, 이준기 (2010). 정보공개에 대응한 공무원의 업무정보 제공행동 연구. 기록학연구, 23, 179-225.
- 전슬비, 강순애 (2016).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1), 61-88.
- 정진임, 김유승 (2014). 정부3.0 시대, 정보공개시스템의 개선 과제. 기록학연구, 39, 45-72.
- 정하영, 강순애 (2013). 서울특별시 자치구청 소속 기록연구사의 직무특성 및 직무환경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2), 57-85.
- 한국.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참여정부의 기록관리혁신. 서울: 청와대.
- 한국. 행정자치부 (2013). 정부3.0 추진 기본 계획서. 서울: 행정자치부.
- 한국. 행정자치부 (2015a). 2014 정부3.0 백서. 서울: 행정자치부.
- 한국. 행정자치부 (2015b). 2014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서울: 행정자치부.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웹사이트]

김소영 (2016. 5. 24). “서울시 행정정보 500만건 ‘깃허브’에 공개.” KBS. 검색일자: 2016. 5. 26.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83967>

부산광역시교육청 자료실(관계부처 합동) (2014). 2014년도 정부3.0 추진계획. 검색일자: 2016. 4. 12.

<https://www.pen.go.kr/www3/bbs/board.knf?boid=b140217102950&wid=19>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2015). 2015 정보공개 사례집. 검색일자: 2016. 5. 20.

<https://opengov.seoul.go.kr/sites/default/files/.../casebook-disclosureOfInformation.pdf>
참여연대 (2003. 9. 3). “공공기관 국가기록물 무차별 폐기.” 참여연대. 검색일자: 2016. 4. 12.
<http://www.peoplepower21.org/Government/551069>
참여연대 · 세계일보 (2004. 5. 31). “기록이 없는 나라.” 참여연대. 검색일자: 2016. 4. 12
<http://www.peoplepower21.org/Government/551516>
American Jobs. Retrieved May 20, 2016, from <http://www.americanjobs.com/>
Freedom of Information Act. Retrieved April 20, 2016, from <http://foia.gov>
The National Archives Records Express (2012). OPM Releases Position Classification. Retrieved
May 10, 2016, from <http://records-express.blogs.archives.gov>
The United States Code. Retrieved May 11, 2016, from www.uscode.house.gov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2012). OPM Established a New Occupational Series
for FOIA and Privacy Act Professionals. Retrieved May 10, 2016, from www.justice.gov
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Open Data. Retrieved May 10, 2016, from www.data.gov
The United States Office Personnel Management (2012). Position Classification Flysheet for
Government Information Series, 0306. Retrieved May 11, 2016, from
<https://www.opm.gov/policy-data-oversight/classification-qualifications/classifying-general-schedule-positions/standards/0300/g0306.pdf>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Jeon, Seul-Bi & Kang, Soon-Ae (2016).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Society of Korea*, 16(1), 61-88.
- Jung, Ha-Young & Kang, Soon-Ae (2013). A Study on Job Characteristics and Job Environment of Records Manager Affiliated Autonomous District in Seoul.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Society of Korea*, 13(2), 57-85.
- Jung, Zin-Im & Kim, You-Seung (2014). Government 3.0 Era, Issues on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9, 45-72.
- Kim, Seung-Tae (2009).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 23(4), 119-147.
- Korea Ministry of the Interior (2013). Project Plan of Government 3.0. Seoul: Korea Ministry of the Interior.

- Korea Ministry of the Interior (2015a). White Paper of 2014 Government 3.0. Seoul: Korea Ministry of the Interior.
- Korea Ministry of the Interior (2015b). 2014 Freedom of Information Annual Report. Seoul: Korea Ministry of the Interior.
- Lee, Bo-ram & Lee, Young-hak (2013). A Study on Institutional Reliability of Open Record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5, 41-91.
- Lee, Chang-Joo (2013). A study on the limitation on disclosure of the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in U.S.A. Doctor degree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partment of Law.
- Lee, Sang-min (2013). FOI and 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Reforms under Obama Administration.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5, 3-40.
- Lee, Young-Hak (2012). The characteristics of Records Management Policy during Participation Government (2003~2008).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3, 113-153.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07). Guide for Each institution Records center installation and management. Daeje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1). Manual for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Daeje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6). Records Managers Arrangement. Daeje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 Park, Jin-Woo (2009). On the Study of a Closed Information by the Law in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Journal of Dong-A Law Review*, 43, 29-56.
- Rieh, Hae-Young (2012).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of and the Improvement Plan for Information Services in Records and Archives Centers.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Society of Korea*, 12(3), 177-201.
- Suh, Hye-Ran & Ock, Won-Ho (2008). An Empirical Study concerning the Issues of Working Conditions and Operational System of Archivists in Korea.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Society of Korea*, 8(1), 235-255.
-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2005). Inspection result on Public Archives Preservation and Management condition. Seoul: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 Yim, Jin-Hee & Lee, Zoon-Ky (2010). A study on the information providing behavior of public servants responding to the Information Disclosur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3, 179-225.

- Yoo, Hyeon-Gyeong & Kim, Soo-jung (2016). A Study on Job Satisfaction of Records Manager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7, 95-130.
- Youn, Eun-ha (2012). Archival Reference Service and Freedom of Information in Korea.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Society of Korea*, 12(2), 163-179.
- Yun, Cheol-Soo & Kim, Gyong-Ho (2010). An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on the Right to Know. *Journal of Media Law*, 9(2), 349-386.

[Web Site]

-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2014). 2014 Project Plan of Government 3.0. Retrieved April 12, from <https://www.pen.go.kr/www3/bbs/board.knf?boid=b140217102950&wid=19>
- Kim, So-young (2016. 5. 24). "Seoul open the five million cases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to GitHub." KBS. Retrieved May 26, from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83967>
-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 The Segye Times (2004. 5. 31). "A country without record."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Retrieved April 12, from <http://www.peoplepower21.org/Government/551516>
-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2003. 9. 3). "Public Institution records Indiscriminate disposal."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Retrieved April 12, from <http://www.peoplepower21.org/Government/551069>
- Seoul Information Communication Plaza Our Services (2015). 2015 Information Disclosures Casebook. Retrieved May 20, 2016, from <https://opengov.seoul.go.kr/sites/default/files/.../casebook-disclosureOfInformation.pdf>